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0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교육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안전의 범위,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~제6조)
- 교육안전위원회 설치·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수당 등(안 제7조~제14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15조)
- 시행규칙(안 제16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「학교안전사고예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금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에 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 - 안 제5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안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
  -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
  - 안 제9조~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하여
  -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구 분	조례안 주요 내용
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조례의 적용범위 (제1조~제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의 목적, “학생”, “교육안전”, “교육기관” 정의</li> <li>○ 조례의 적용범위(교육안전의 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활동 안전, 교육환경 안전, 교통안전, 시설안전, 보건안전, 급식 안전, 안전문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
구청장의 책무, 계획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(제4조~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청장 책무(교육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)</li> <li>○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책추진 방향,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, 유관기관 협력 등</li> </ul> </li> </ul>
교육안전위원회 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운영 등 (제7조~제1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, 정책, 유관기관 협조 등 심의위원회 구성, 임기, 운영 등</li> <li>- 15명 이내 당연직, 위촉직으로 구성, 위원장은 소관사무국장,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</li> <li>- 임기 2년(1회 연임가능), 운영(정기 연 1회 및 임시)</li> </ul> </li> </ul>
교육, 홍보, 보조금 지원 (제15조~제1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 및 홍보(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·보급)</li> <li>○ 보조금의 지원(교육안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지원)</li> </ul>

- 최근 학생들의 체험학습, 야외수업, 스포츠 행사,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밖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,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교육청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 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